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요청받은 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,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법령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,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 제5항 및 부칙).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5항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대통령령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9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	부칙	부칙

	이 법은 공포 후 <u>3개</u>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법은 공포 후 <u>6개</u>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-	--	--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3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박선원 · 송재봉
김준혁 · 송옥주 · 김문수
김정호 · 박홍근 · 민병덕
백혜련 · 남인순 · 서미화
이원택 · 한정애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

는 것임(안 제9조제5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법령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,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(안 제9조제5항 및 부칙).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